

[별지 제4의3호 서식] <개정 2025. 11. 28.>

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」 제109조의3에 따름		
소속		공무원 구분	직급·직무군 또는 상당 계급 (호봉)		
전(前) 소속	(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」 제109조의3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작성함)		[] 일반직(임제 제외) [] 별정직		
성명	(한글)	생년월일			
	(한자)				
	주소	□□□-□□□			
전화번호 (자택)		최초 임용일	년 월 일	근속기간	년 개월
수당 청구액		산출내용			
비위 사실	[] 있음 [] 없음(면직일: . . . 불송치 등 처분일 . . .)	[] 비위조사 중 []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[] 징계처분 요구 중 []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	[] 수사진행 중 [] 형사재판 계류 중	[] 징계의결 요구 필요 [] 징계처분 중	

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」 제109조의3에 따라 ([]조기퇴직수당·[]자진퇴직수당)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신청인 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소속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. 다만,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2. 조기·자진 퇴직원(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」 별지 제4호의4서식) 1부. 다만, 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」 제109조의3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3.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서 등 증빙자료 1부(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」 제109조의3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------	---

확인 인사담당 (서명 또는 인)

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소속기관의 장 직인

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

비고

-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, 조기퇴직수당과 자진퇴직수당 중 해당란에 “√”표시를 하여야 하며,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.
- 비위 사실란 중 면직일과 불송치 등 처분일은 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」 제109조의3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